

고려후기 상반된 질서의 공존과 그 역사적 의미*

이종서 **

1. 머리말
2. 원간섭기 ‘불개토풍(不改土風)’ 원칙의 성립과 내용
 - 1) 쿠빌라이 ‘의관 풍속의 유지’ 약속과 그 의미
 - 2) 충렬왕대 ‘세조구제(世祖舊制)’의 성립
3. 원 체제에 대한 긍정과 새로운 지향 및 질서의 성립
 - 1) 원 복식의 착용과 신분 질서의 동요
 - 2) 성리학적 질서의 수용과 원법(元法)의 적용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에 원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도 하며, 본고에서도 그렇게 호칭할 것이다. 그간 원간섭기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까지는 원의 간섭에 저항하며 자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로 평가되었다. 권문 세족은 외세의존적이고 부패한 세력으로 설정되었고, 신진사대부는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으로 설정되었으며,¹⁾ 신진사대부에 의해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조

* 이 논문은 2014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이기남, 1971 「충선왕의 개혁과 사림원의 설치」 『역사학보』 52; 김윤곤, 1974 「신흥사대부의 대두」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민현구, 1974 「고려후기의 권문세족의 성립」 『호남

선왕조가 개창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원간섭기의 정치세력을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로 대별하는 시각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²⁾ 또한 원간섭기를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원 제국 체제 안에서 독립을 보장받게 된, ‘세조구제(世祖舊制)’로 표현되는 질서의 성립 경위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를 통하여 원의 힘이 고려를 압도하면서도 고려가 자주성을 주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 규명되었다. 반면에 세조구제와는 다른 양상이나 의식, 질서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충선왕대 이후 고려인 스스로 세조구제를 부정하면서 원의 제도와 질서에 통합되고자 했던 양상이 지적되었다.⁴⁾ 성리학을 수용한 고려의 유교 지식인들이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긍정하고, 화이론적 천하관과 유교적 보편주의를 추구했음도 규명되었다.⁵⁾

이처럼 1980년대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고려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지향과 이 와 달리 국제적 보편성을 중시하는 지향이 동시에 공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충선왕의 개혁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충선왕은 고려의 국체 보전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면서도 중국 한족 왕조의 구제와 그것을 수용한 한법(漢法)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당시 원에서 추진한 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충선왕의 개혁은 원의 사상과 제도, 문화 등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으면서도 고려 전기의 정치체제를 일부 복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⁶⁾ 이 연구는 원간섭기의 상반되는 듯 보이는 질서와 지향을 종합

문화연구』 6.

- 2) 김광철, 1991 『고려후기세족층연구』, 동아대학교출판부.
- 3) 이익주, 1996 「고려·원관계의 구조에 대한 연구: 소위 세조구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6.
- 4) 이익주, 1992 「충선왕 즉위년 개혁정치의 성격: 관제개편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7; 김형수, 2001 『원간섭기 고려의 정치세력과 정국동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도현철, 1994 「14세기 전반 유교지식인의 현실인식」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마종락, 2000 『원간섭기 억재 이제현의 유학사상』 『한국중세사연구』 8; 김형수, 2002 「책문을 통해 본 이제현의 현실인식」 『한국중세사연구』 13; 채웅석, 2003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현실』 49.
- 6) 이강한, 2008(a) 「고려 충선왕의 국정 및 ‘구제’ 복원」 『진단학보』 105; 이강한, 2008(b)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원의 영향」 『한국문화』 43.

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본고의 논지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만, 충선왕의 지향과 정책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여, 원간섭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질서의 내용과 성격, 그 질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또한 조선 건국 후의 역사 전개를 염두에 둔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려는 원간섭기의 상반된 질서나 지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하였으므로 이들은 결국 조선에서 정리되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제도와 지향, 나아가 성격이 결정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원간섭기에 공존했던 여러 양상과 그 양상이 반영하는 상반된 두 질서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원간섭기 ‘불개토풍(不改土風)’ 원칙의 성립과 내용

1) 쿠빌라이의 ‘의관 풍속의 유지’ 약속과 그 의미

장기간에 걸친 몽골의 침략은 태자였던 원종이 대륙에 가서 쿠빌라이와 협정을 맺음으로써 종료되었다. 당시 고려에서는 몽골을 야만족으로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몽골과 처음 접촉하면서 형성되었고 이후 장기간 전쟁을 지속하면서 강화되었다.

고려가 몽골과 처음 국교를 맺을 때에 몽골 사신은 텔웃과 텔모자를 착용하고 활과 화살을 차고 곧바로 전상에 올라와 왕의 손을 잡고 가슴 속에서 서장을 꺼내 주었다. 이때 최선단(崔先旦)이 “어찌 추한 오랑캐[醜虜]를 지존에게 가까이 가게 하겠는가?”라고 울며 말한 것에서⁷⁾ 몽골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고려는 문명국인 반면 몽골은 야만적인 오랑캐라고 여겼던 것이다. 몽골을 야만족으로 여기는 인식은 몽골의 1차 침략 직후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텔웃과 텔모자를 착용하고 활과 칼을 찬 채 의례에 참석한 몽골인의 행위는 야만을 상징하였고, 고려에서 그들에게 입으라고 준 자색 난삼과 허리띠는⁸⁾ 문명을 상

7)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6년(1219) 1월.

8)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8년(1231) 12월.

징하였다.

따라서 몽골과의 전쟁기에 고려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은 몽골에 항복하면 몽골의 수준 낮은 풍속을 강요받게 될 것을 걱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삼별초 정권에서 일본에 보낸 국서 중에서 몽골을 “털가죽 입은 사람들이 원려(遠慮)가 없다”고 표현하거나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는 것[被髮左衽]은 성현도싫어하는 일”이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⁹⁾

그러므로 고려 태자(훗날의 원종)가 강화를 맺고자 대륙으로 떠날 때 고려의 풍속 유지를 약속 받는 것이 주요 목표 중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원종 즉위 직후 쿠빌라이가 보내온 조서에는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고 모두 바꾸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 조항이 쿠빌라이가 약속한 6가지 중 첫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¹⁰⁾ 고려에서는 협상의 여러 의제 중 이 조항을 가장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제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전기에 이미 송의 관복제도를 수용한 것을 고려하면 ‘의관 풍속 유지’의 핵심 의미는 중국 한족 왕조에서 유래한 문화적 우월성과 또 이를 통해 표현해 온 고려의 자주적 위상을 지키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국왕과 관리의 복식은 양식상 송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일치하였다. 이는 고려의 지배층이 송 양식의 왕복과 관복을 우월한 문화를 표상하는 요소로 간주 했음을 시사한다.¹¹⁾ 따라서 고려의 ‘의관풍속의 유지’ 요구는 왕복이나 관복처럼 공식적인 분야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고려는 밖으로 중국에 사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였다.¹²⁾ 이 황제국 체제는 각종 의례로 실현되었으며, 그 의례에서 착용하는

9) 「高麗牒狀不審條條」(노명호 외, 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455면).

10)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1년(1260) 8월 임자 “一曰 衣冠 從本國之俗 皆不改易 行人 惟朝廷所遣 予悉禁絕 古京之遷 遅速量力 屯戍之撤 秋以爲期 元設達魯花赤 魯合反兒拔覲 魯一行人等 俱西還 其自願托迹於此者 十餘輩來使 亦不知定在何所 事須根究 今後 復有似 此告留者 斷不准從.”

11) 이종서, 2012 「고려 국왕과 관리의 복식이 반영하는 국가 위상과 자의식의 변동」 『한국 문화』 60.

복식은 의례의 성격과 위상을 외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국내 의례에서 송의 황제복인 십이장복·십이류면과 황포를 착용하였고, 신하들은 송의 관료와 동등한 복색의 공복을 착용하였다. 이렇듯 송의 복식을 등급까지 일치시켜 착용한 것은 내적으로 중국과 동등한 고려 국왕의 위상과 국가 체제를 표상하는 것이었다.¹³⁾ 따라서 고려에서는 ‘의관 풍속의 유지’에 중국 한족 왕조에서 유래한 수준 높은 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고려 전기 수준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의관 풍속의 유지’를 복식에 국한하지 않고 국왕의 위상 및 국가 체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유지를 뜻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에서 ‘의관 풍속의 유지’에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 것은 태자(충렬왕)가 원 공주(제국공주)와의 혼인이 결정되어 원에 거주하던 시기에 고려 사신단이 경험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1273년(원종 14)에 사신단의 서장관으로 파견된 이승휴는 원 세조 쿠빌라이에 대한 축하 의례를 보고 “예수(禮數)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고려에서는 원과 동일하게 황제국의 의례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쿠빌라이는 고려 사신단이 고려의 제도에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의례를 마친 후 참석자에게 ‘오랑캐의 옷[戎服]을’ 하사하면서도 고려 사신단만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전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였다. 원의 황태자도 고려 의례에 따라 축하하도록 하여 사신단은 용복이 아닌 고려의 공복(公服)을 착용하고 의례를 행하였다. 원종의 아들로서 고려 사신단의 정사(正使)로 간 순안후는 자신을 “삼한 동해의 용손[三韓東海之龍孫]”이라고 하여 신성한 혈통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하였다.¹⁴⁾

12) 노명호, 1999 「고려시대의 다원적 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13) 이종서, 2012 앞의 논문.

14) 『動安居士集』 권4, 「賓王錄」 “其明日 侯邸奉表陳謝 (중략) 皇帝出自便殿 就于殿上 與皇后升寶座而受賀 其禮數與我本朝大同小異 (중략) 其閣□□□□□□傳於侯邸曰行卿本國禮□□□□□□郎廉承益通喝而行焉 禮畢後□□□□傳賜諸侍臣 改以戎服上殿 而勅我一行不改者 (중략) 皇太子以連日侍宴不得出外 至是月二十九日 乃於大都城西鎮國寺北高梁之墟 坐氈幕受賀 (중략) 姜宣使承傳出云 令殿先入 有頃 姜宣使又出 傳以本國禮拜見者由是一行 皆以公服 列立於氈幕之外 賈外郎廉通喝禮畢 (중략) 侯邸以啓謝之 其辭曰 某啓萬古中都之鳳省 特闢華筵 三韓東海之龍孫 獲觀盛禮 感兢命骨 訓謝無階.”

이러한 사례들은 쿠빌라이가 약속한 ‘의관 풍속의 유지’를 고려에서 문화 뿐 아니라 국가 위상과 체제유지 약속으로 확대하여 해석했을 뿐 아니라 쿠빌라이도 고려에서 이처럼 해석하는 것을 용인했음을 알려준다. 쿠빌라이의 궁정에서 고려의 독자적인 의례와 복식이 혀용된 것은 곧 쿠빌라이가 태자 신분이었던 원종에게 고려 전기 수준의 문화와 제도 유지를 약속하였고, 원종이 국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에는 그 약속이 지켜졌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의관 풍속의 유지’가 대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취하고 있던 고려의 국가 위상과 체제를 보장하는 것 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고려의 모든 기존 제도와 질서의 유지를 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신분질서도 포함된다.

무신정권이 무너진 뒤 쿠빌라이는 고려에 다루가치를 다시 설치하였다. 다루가치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¹⁵⁾ 다루가치의 설치는 원의 법률이나 관습이 고려의 기존 질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원의 제도에 근거하여 고려의 신분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가 발생하였다. 1271년(원종 12)에 다루가치가 고려의 체례(體例)를 고치자고 전의 했던 사실이 1300년(충렬왕 26)의 기록에서 확인된다.¹⁶⁾ 당시 다루가치가 바꾸려고 했던 ‘체례(體例)’에는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려인 조석기(趙石奇)가 다루가치에게 양인이 되기를 호소하자 다루가치는 원의 법을 적용하여 조석기를 양인으로 판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원의 최고 관부인 중서성에서 고려왕의 요청을 수용하여 고려의 습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의 중서성에서 고려의 노비법을 따르도록 결정한 것은 쿠빌라이가 약속한 ‘의관 풍속의 유지’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는 쿠빌라이가 고려

15) 도단(都旦)은 몽골의 1차 침략 직후인 1232년에 파견되어 “고려의 국사를 도통(都統)하고자 왔다.”며 궁중에 거처하려 하였다[『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1232) 2월]. 또한 원 세조 쿠빌라이는 월남(安南)에 ‘육사(六事)’의 여행을 요구하면서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통치하게 하라[仍置達魯火赤統治之].”라고 하였다(『元史』 권209, 열전96 外夷2 安南傳 世祖 至元 4년 9월). 이러한 사례들은 다루가치의 권한이 감시 뿐 아니라 통치까지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16) 『고려사』 권31, 세가31 충렬왕 26년(1300) 11월 병인.

전기 수준의 체제와 질서의 유지를 보장했다고 여기고 있었고, 원 세조 쿠빌라이도 협상의 당사자였던 고려 원종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를 용인 내지 묵인했던 것이다. 이에 고려는 고유의 노비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원종은 생전에 황제국의 의례를 행하고 사후에는 독자적인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를 받은 고려 최후의 국왕이 되었다.

2) 충렬왕대 ‘세조구제(世祖舊制)’의 성립

원 세조 쿠빌라이는 ‘의관 풍속의 유지’ 약속을 통해 고려가 전기 수준의 문화와 체제 그리고 독자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의 법률과 제도에 근거한 개입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274년에 원종이 사망하고 충렬왕이 즉위하자 ‘의관 풍속 유지’의 의미가 상당 부분 변질되었다.

충렬왕은 1275년에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하여 첨의부를 설치하고 이부와 예부를 합하여 전리사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관부를 변경하였다. 이것이 원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분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1279년에 원에서 첨의부에 정4품 인장을 하사한 것을 보면,¹⁷⁾ 원과 동등한 격과 명칭의 관부를 고려에 들 수 없다는 원의 인식에 근거한 변경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 최고 관부의 위상이 원 제국 체제 안에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국가의 위상도 원 제국 체제 안에서 설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독자성을 인정했던 이전과 달리 황제국과 제후국의 관계 속에서 고려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왕의례에 적용되는 각종 요소들이 격하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충렬왕은 1276년에 다루 가치가 고려의 의례가 참월하다고 비판하자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예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선지(宣旨)를 왕지(王旨)로, 짐(朕)을 고(孤)로 고치는 등 용어의 격을 제후국의 위상에 맞게 낮추었다.¹⁸⁾

이렇듯 관부의 명칭을 바꾸고 의례의 격을 낮추는 것은 쿠빌라이가 훗날 원종이 될 고려 태자에게 했던 약속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로부터 ‘의관 풍속의 유지’로 표현된, 고려의 독자성에 대한 인정은 협상의 상대자였던 원종이 살아 있

17) 『고려사』 권76, 지30 백관 門下府.

18)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1276) 3월.

을 때까지만 유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종이 사망하자 원에서는 고려에 대해 제도와 의례의 격을 제후국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낮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원종 사후에는 ‘의관 풍속의 유지’의 의미가 크게 축소되고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종 때에는 고려의 정치적 자주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녔던 반면, 충렬왕 때부터는 원제국의 체제 속에서 고려의 독자적인 풍속과 질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1278년(충렬왕 4)에 원 세조 쿠빌라이가 한 아래와 같은 말에서 잘 확인된다.

강수형에게 “고려의 복색(服色)은 어떤가?”라고 묻자 “몽골[韃靼]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지만, 조사(詔使)를 맞이하거나 절일(節日)을 하례할 때에는 고려의 복식으로 행사를 치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짐이 고려옷을 금하였다고 하나 어찌 그렇겠는가? 너희 나라의 예를 어찌 갑자기 폐하겠는가!”라고 하였다.¹⁹⁾

위 인용문에서 보듯 1278년 7월에 원 세조는 고려 복식을 금한 적이 없다고 하며, 전통 복식의 유지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고려 관부의 명칭과 의례의 격을 낮추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때였다. 그리고 1278년 2월에 고려에서는 왕명으로 원의 복식을 착용하게 하였다.²⁰⁾ 고려인들은 이들 두 조치가 쿠빌라이의 요구로 시행되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쿠빌라는 몽골 복식을 강요할 의사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부 명칭과 의례의 격을 낮춘 것이나 고려의 전통 복식을 유지하는 것 모두 쿠빌라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원 세조가 고려 복식을 유지하도록 허용한 것은 원종과의 강화 협상에서 ‘의관 풍속의 유지’를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원종에게 약속한 ‘의관 풍속의 유지’가 고려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조항이었던 반면, 원종 사후 충렬왕 때에 이르면 원 제국의 질서에 대한 순응을 전제로 고려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 변질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4년(1278) 7월 “因問康守衡曰 高麗服色 何如 對曰 服韃靼衣帽 至迎詔賀節等時 以高麗服將事 帝曰 人謂朕禁高麗服 豈其然乎 汝國之禮 何遽廢哉.”

20) 주31) 참조.

충렬왕 때에 ‘의관 풍속의 유지’가 이와 같은 의미로 변질된 것은 원 세조 사망 후 정동행성을 이용하여 간섭을 강화했을 때에도 확인된다. 1299년(충렬왕 25)에 정동행성 평장정사(平章政事)로 파견된 활리길사는 궁중 의례와 노비 제도를 바꾸려 하였다. 궁중 의례는 황제의 조정과 동일한 의례를 행하는 것을 지목하였고, 노비제도는 부모 중 하나가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것을 부정하고 원의 제도에 따라 노비와 양인을 판정하려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기존의 의례와 제도를 고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노비와 관련해서는 원종과 쿠빌라이가 생존했던 1271년에 고려의 습속을 따르도록 한 사실을 자세히 통보하였다.²¹⁾ 이에 대해 원에서는 1301년(충렬왕 27)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조(詔)하여 이르기를 “(중략) 보내온 표문에 조종(祖宗)의 구법(舊法)을 변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선조(先朝, 쿠빌라이) 때에 본국(고려)의 관호(官號)가 조정과 다르지 않은 것은 이미 일찍이 개정하였다. 왕은 지금 마땅히 그것을 유추하여 일이 의를 해하는 것이라면 바꾸는 것 또한 어찌 어렵겠는가? (중략)”라고 하였다. 중서성에서 자문(咨文)을 보내 이르기를 “(중략) 앞서 도성(중서성)에서 천인과 양인의 일을 의논하여 결정했는데 또 본국(고려)의 구속(舊俗)으로써 사연을 삼으니 이는 오히려 말할 만하다. 왕국이면서 천자 전정(殿庭)의 예를 행하는 것은 신하로서 복속한 초기에 마땅히 논했어야 하는 것이다. 전에 혹시 살피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즉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²²⁾

위 인용문에서 보듯 원 황제의 조서와 중서성의 자문에서는 천자의 조정에서 행하는 예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노비제는 고려의 기존 제도를 따르도록 허락하였다. 여기에서 쿠빌라이가 생존했을 때에 이미 고려의 관호를 개정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고려에서 천자국의 격식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쿠빌라이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적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변경을 요구한 것임을

21) 『고려사』 권31, 세기31 충렬왕 26년(1300) 10월 정유: 『고려사』 권31, 세기31 충렬왕 26년(1300) 11월 병인.

22) 『고려사』 권32, 세기32 충렬왕 27년(1301) 4월 기축 “詔曰 (중략) 來表 乞不變更祖宗奮法 賤惟 先朝 以本國官號與朝廷不殊 已嘗改正 王於是時 卽當以類推之 事如害義 改亦何難 (중략) 中書省移咨曰 (중략) 在前 都省議得驅良之事 且以本國奮俗爲辭 此猶可說 至如王國而用天子殿庭之禮 卽臣之初 旣當論者 昔或不審 自今宜卽更之.”

알 수 있다. 쿠빌라이가 약속한 ‘의관 풍속의 유지’에 황제국의 관제나 의례는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에 양인과 천인을 분간하는 일에 대해서는 쿠빌라이가 생존했을 때 원의 중서성에서 결정한 사례에 근거하여 고려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회답을 받고 고려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의례의 격을 제후국에 맞게 낮춘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해에 국왕 상복(常服)의 복색이 원과 같다는 이유로 황색에서 지황(芝黃)으로 바꿨다가 1304년에 명백한 금령이 없었음을 알고 다시 황포를 입었다.²³⁾ 이를 보면 원에서 지적한, ‘정편(淨鞭)을 잡고 만세를 부르는’ 등의 의례는 폐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302년에는 활리길사가 원의 체례에 따라 양민으로 판정했던 인물을 다시 노비로 등록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²⁴⁾

이러한 사례들은 ‘의관 풍속의 유지’가 고려전기 수준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보장하던 것에서 원제국 체제에 예속된 상태에서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고려에서 1337년(충숙왕 복위 6) 경에 원에 보낸 표문에서 “세조께서 약속(約束)은 비록 원의 제도를 따르더라도, 전장(典章)은 조풍(祖風)을 바꾸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 것에서²⁵⁾ 분명하게 확인된다. ‘약속’은 제후국에 적용되는 구속력을 뜻하는 것이고,²⁶⁾ ‘전장’은 고려 내부의 질서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 스스로도 쿠빌라이가 고려의 황제국 체제를 용인하지 않는 한편, 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관호와 의례를 격하함과 더불어 의복과 노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충렬왕 때에 성립

23) 『고려사』 권72, 지26 輿服 官服 視朝之服;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0년(1304) 2월.

24)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28년(1302) 1월.

25) 『稼亭集』 권10, 表牘 「謝復弓兵馬匹表」 “值世皇龍飛之際 尤著勳勞 有錫馬三接之榮 餘館甥貳室之慶 約束雖遵於聖制 典章無墜於祖風.”

26) ‘약속(約束)’의 의미는 현대 한국어의 ‘약속’이 아니라 “도통사는 겹설관에게 약속을 받고, 겹설관은 [중략] 임금께 아뢰어 시행 한다[都統使受約束於怯薛官 怯薛官 (중략) 聞奏施行].”에 쓰인 것처럼 ‘통제’, ‘규제’, ‘구속’ 등의 뜻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한 이와 같은 원칙은 이후 ‘세조구제’로 인식되면서 대외적으로 고려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²⁷⁾

3. 원 체제에 대한 긍정과 새로운 지향 및 질서의 성립

1) 원 복식의 착용과 신분 질서의 동요

원 세조 쿠빌라이가 약속한 ‘의관 풍속의 유지’는 이후 ‘세조구제’로 조정되면서 고려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고려 후기의 기록을 살피면 ‘세조구제’는 주로 대외적인 사안에서 거론되고 국내의 사안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 같지 않다. ‘세조구제’는 고려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 두 요소를 포함하지만, 고려의 정치적 독립이 위협을 받을 때 대외적으로 거론되었을 뿐, 이에 근거하여 고려의 독자적 문화를 보존할 것을 주장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충렬왕 때부터 자발적으로 원의 복식을 수용한 것이 확인된다.

충렬왕은 태자 시절에 ‘변발호복(辯髮胡服)’, 즉 몽골의 머리모양을 하고 몽골 복장을 입은 채 귀국하여 고려 사람들을 놀래고 실망시켰다.²⁸⁾ 즉위 후에는 관리들에게 머리모양과 복식을 몽골식으로 바꾸도록 강제하였으며,²⁹⁾ 원에서 오는 왕비(원 공주)와 더불어 몽골 복장을 착용한 채 개경에 들어왔다. 당시 고려의 관료들은 ‘오랑캐의 옷[戎服]’을 고려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도록 권하였지만 충렬왕은 듣지 않았다.³⁰⁾ 마침내 1278년(충렬왕 4)에는 모든 관리에게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고 몽골 복식을 착용하라고 명령하였다.³¹⁾ 이후 역대의 국왕과

27) 이익주, 1996 앞의 논문.

28)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3년(1272) 2월 기해.

29)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1274) 10월 신유.

30)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1274) 11월 정축.

31) 『고려사』 권72, 지26 輿服 冠服通制 “四年二月 令境內 皆服上國衣冠 開剃蒙古俗 剃頂至額 方其形 留髮其中 謂之開剃 時自宰相 至下僚 無不開剃 唯禁內學館 不剃 左承旨朴恒 呼執事官 諭之 於是 學生皆剃.”

관리들은 몽골식으로 머리를 깎고 몽골의 복식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려의 국왕과 관리가 몽골의 복식을 착용한 것은 쿠빌라이가 확약한 ‘의관 풍속의 유지’는 물론 충렬왕 때에 새롭게 정립된 ‘세조구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몽골 복식의 착용은 원의 강요가 아니라 충렬왕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1278년에 고려에서 복식 변경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5개월 뒤에 원 세조가 “사람들은 짐이 고려 옷을 금하였다고 하나 어찌 그렇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³²⁾ 원종은 “나는 차마 하루아침에 조상의 가풍을 바꿀 수 없다.”며 끝까지 고려 전기의 복식을 착용하였다.³³⁾ 이 역시 복식제도의 개변이 원종의 아들 충렬왕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이로부터 충렬왕 때부터 ‘세조구제’와 전혀 다른 방향의 지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한족 왕조의 문화 요소가 포함된 고려의 전통 문화보다 고려도 그 일원인 원 제국의 문화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편문화를 추종하는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고려의 지배층은 독자적인 복식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려 옷을 벗고 원에서 통용되는 몽골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충렬왕대 이후에는 ‘의관 풍속의 유지’는 물론 ‘세조구제’도 대내적으로 크게 존중되는 원칙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 시기에 고려의 전통적 신분질서와 배치되는 관리 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전기의 신분 계승은 부모 중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녀도 천인이 되는 ‘일천즉천’의 원리를 따랐다. 그리고 원종과 충렬왕은 이 원리가 작용하는 고려의 노비법을 ‘의관 풍속의 유지’나 ‘세조구제’에 의거하여 지킬 수 있었다.³⁴⁾ 이 원리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천인인 경우는 물론 어미만 천인인 열자(孽子)도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충렬왕대 이후 이들 부류에서 관직에 진출하여 최고위 재상까지 승진한 사례가 디수 발생하였다.

강윤소와 강윤충, 이정, 전영보 등은 본래 노(奴)로서 천인 신분이었다.³⁵⁾ 그

32) 주19) 참조.

3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1274) 12월 정사.

34) 이강한, 2007 「정동행성관 활리길사의 고려제도 개변 시도」 『한국사연구』 139 참조.

러나 충렬왕 등 국왕의 총애를 받아 관직을 받고 승진하여 고위직에 이르렀다. 채하중, 최안도, 권중화 등 다수의 열자들도 관리가 되어 재상까지 승진하였다.³⁵⁾ 이러한 양상은 고려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지켜 낸 ‘일천즉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최고 권력자인 국왕은 기존의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임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기존 체제와 질서가 지닌 권위와 이 권위에 의해 보호받는 계층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일례로 문신 관료 집단과 갈등했던 의종은 환관 정함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다. 관노 출신인 백선연, 왕광취, 백자단도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³⁶⁾ 이에 대해 기존 관료들은 정함의 관직이 올라갈 때마다 강력히 반대하고, 국왕이 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반면에, 원간섭기에 충렬왕은 유청신처럼 한품제의 적용을 받던 인물은 물론³⁷⁾ 열자를 포함한 천인까지 관리로 임용하고 고위 관직으로 승진시켰다. 이후의 국왕들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고려 전기라면 불법이나 틸법으로 간주되었을, ‘일천즉천’의 원리를 거스르는 관직 임명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료들의 공식적인 저항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때에는 고려 전기의 질서에 근거한 반대가 확인되지만, 이후에는 저항의 빈도와 강도가 확연히 떨어졌다.³⁸⁾

이처럼 원간섭기에 천인을 비롯한 하층 신분의 인물들이 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한 것은 ‘세조구제’가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명분이나 영향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고려의 지배층이 대내적으로 이 원칙을 중시했다면 국왕은 천인 임용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기존 관리들은 이를 강력하

35) 『고려사』 권123, 열전36 폐행 강윤소;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 강윤충;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 이정;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 전영보.

36) 『고려사』 권108, 열전22 채홍철;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1 채하중; 『고려사』 권124, 열전37 최안도;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1 권한공.

37) 『고려사』 권122, 열전35 환자 정함; 『고려사』 권122, 열전35 환자 백선연.

38)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 유청신.

39) 이종서, 2015 「고려 후기 열자(孽子)의 지위 향상과 그 역사적 배경」 『역사와 현실』 97.

게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천인 출신 인물의 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고려 전기의 신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했거나, 혹은 그러한 의지가 있었을지라도 그 질서를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려준다. 그 원인으로는 원의 신분 질서와 관직 임용 관행을 상정할 수 있다.

충렬왕이 천인을 포함한 인물들을 측근 세력으로 양성할 수 있었고, 또 양성 해야 했던 것은 원 황제의 지지를 배경으로 권한이 강해진 동시에 대외 의존성이 증대된 국왕의 입지 때문이었다.⁴⁰⁾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의 관직 제도나 신분 질서에서는 그러한 임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양국의 관직 제도나 신분 질서에 모두 위배되었다면 그러한 임용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렬왕은 원의 관직 제도인 겁설(怯薛)을 수용하여 측근 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하였다.⁴¹⁾

또한 원 세조 쿠빌라이가 재위 중이던 1268년에 음서를 받는 대상 중에 서자(庶子)를⁴²⁾ 포함시킨 것을 보면⁴³⁾ 원에서 서얼 임용을 금지하는 법이나 관행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본래 신분이 노비였더라도 통치자의 의지로 관직을 주는 것 역시 정상적인 임용으로 간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의 국왕들은 원의 이러한 질서와 관행에 기대어 얼자를 포함한 천류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신분제의 문란 또는 동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양상이 원간접기에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40) 이익주, 1996 『고려·원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2-83면 참조.

41) 권영국, 1995 『고려 후기 군사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보광, 2012 「고려 충렬왕의 케시크(怯薛, kesig)제 도입과 그 의도」 『사학연구』 107 참조.

42) 이때의 서자는 고려의 얼자(孽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이종서, 2015 앞의 논문 참조).

43) 小林高四郎·岡本敬二, 1964 『通制條格の研究』 제1책, 日本: 中國刑法志研究會, 257면 제 147조: 『통제조격』 권6, 選舉 廢例 “廢例 至元五年二月 中書省 吏部呈廢叙體例 都省准擬 一取廢官員 擬合具父祖前後歷仕根脚 所居官職 及 去任致仕身故 各各年月緣由 抄白所受 宣命苟付 彩畫宗枝 指定承廢人嫡庶姓名年甲申牒.”

2) 성리학적 질서의 수용과 원법(元法)의 적용

원간섭기에 고려는 ‘세조구제’로 표현되는, 제후국으로서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원으로부터 보장받았다. 동시에 고려의 전통 복식을 버리고 원의 복식을 착용하거나 얼자를 포함한 천인을 임용하여 고유한 문화와 신분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듯 고유한 문화와 신분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양상은 기본적으로 원의 힘이 고려를 압도했던 당시의 형세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의 쇠퇴와 더불어 역시 약화 내지 소멸할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복식 방면에서 잘 확인된다.

고려는 송의 관복 제도를 수용하고 이를 높은 문화 수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렬왕이 몽골 복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원의 황실 인사나 관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과의 교류가 심화될수록 대륙에서 유행하던 몽골 복식의 장점은 관리들에게도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 복식은 고려 전기에 송의 복식에 부여했던, 문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에 원이 쇠퇴와 더불어 공식성을 상실하였다. 공민왕 때에 공식적 영역에서 고려 전기의 복식제도를 회복하였고, 이후 명의 관복 제도를 수용하였다.⁴⁴⁾ 고려는 형세적인 측면에 기인하여 몽골 복식을 착용했지만,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한족 문화권의 복식에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렇듯 몽골 복식의 수용은 온전히 형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임용은 그렇지 못하다. ‘세조구제’에 의해 재확인된 고려의 신분질서에서 천인에 속해야 했던 얼자들이 원의 세력이 물러간 뒤에도 과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계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과거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얼자가 과거를 통하여 진출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를 형세적 측면에서 찾기는 어렵다.

원간섭기에 국왕은 기존 신분질서와 어긋나게 관직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임용이 원이 세력이나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강화된 국왕권 등 일시적 형세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이 역시 원의 쇠퇴와 더불어 위축되거나 소멸했어야 한다. 그런데 공민왕대 이후 부모가 모두 천인인 인물의 임용 사례는 확연히 줄었지만

44) 이종서, 2012 앞의 논문 참조.

얼자의 임용은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특히 과거를 통한 진출이 다수 이루어졌다.⁴⁵⁾ 이들이 과거에 응시함에 앞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종량(從良)’이나 ‘허통(許通)’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다. 얼자의 과거 응시와 합격은 자격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했다는 점에서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며, 기존 지배층도 동의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간섭기는 물론 의종이나 무신정권 시기에도 확인되는, 초법적 권력에 기댄 관직 수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물론 전통적 지배층이 천인의 관직 진출을 정서적 차원에서까지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위 신분을 경멸하고 특권을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은 상위 신분의 공통된 성향이기 때문이다. 한때의 형세로 인해 불가피하게 용인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기존의 관행을 신분제의 동요나 문란으로 규정하고 상위 신분의 법적, 제도적 특권을 재확립하려 할 것이다. 원간섭기가 끝난 뒤 부모가 모두 천인인 인물의 관직 진출 사례가 확연히 줄었다는 점에서 부모가 천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비가 지배층이고 어미만 천인인 얼자는 지속적으로 임용되었고 특히 과거 응시를 통한 진출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한때의 형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얼자의 관직 진출을 가능케 하는 명분과 제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리학 이념의 수용과 한법(漢法)에 토대를 둔 원 법의 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충렬왕이 몽골 복식을 수용한 이후 고려 전기의 질서와 배치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형세에 기인한 변동이라기보다 일정한 사상이나 신념에 근거한 변동이었다고 파악되는 양상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원의 강요나 고려의 이익 추구, 국왕권 강화와 관계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충선왕은 북위 의례를 거행할 때에 중국 황제의 신하를 상징하는 자포(紫袍)를 착용하였다.⁴⁶⁾ 이는 충렬왕이 원을 의식해서 황포를 입지 못하다가 구체적인 금령이 없었음을 알고 다시 착용한 것과 전혀 다른 의식을 반영한다. 스스로를

45) 이종서, 2015 앞의 논문 참조.

46)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1308) 8월 갑인.

제후로 여기고 제후에 합당한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묘호와 시호를 자체적으로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원 황제에게 선대왕의 시호를 요청한 것에서도⁴⁷⁾ 확인된다.

또한 충선왕은 복위교서에서 원 세조 쿠빌라이가 고려의 동성혼을 비판한 사례를 거론하며 왕실을 포함한 문무 양반의 동성혼을 금지하였다.⁴⁸⁾ 그러나 쿠빌라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충렬왕 때에는 왕실과 지배층의 동성혼이 유지되었다. ‘세조구제’에 의거하여 동성혼을 유지해도 무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충선왕이 동성혼을 금지한 시점은 이미 원 세조가 사망한 이후였다. 따라서 충선왕이 원 세조 쿠빌라이를 거론한 것은 동성혼 금지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충선왕은 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동성혼을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여겨서 금지한 것이다.⁴⁹⁾

충선왕은 단지 중국의 전통적 혼인 원칙이기 때문에 동성혼을 금지한 것이 아 니었다. 동성금혼이 중국의 혼인 원칙임은 고려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의 동성혼 관행은, ‘학술’이 있다는 평을 들은 일부 왕족의 비판이 있었을 뿐,⁵⁰⁾ 충렬왕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렇듯 고려에서 동성혼을 지속한 것은 중국 한족의 동성금혼 원칙을 옮고 그름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국과 타국의 풍속 차이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선왕의 동성혼 금지 명령은 이전의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원적인 원리에 근거하 여 시비를 가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일원적인 관점은 곧 성리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7)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1308) 10월 병진.

48)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1308) 11월 신미.

49) 기존 연구에서는 충선왕이 원에서 고려 국왕과 원 공주와의 혼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제하고, 재상 가문과의 혼인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동성혼을 금지했다고 보았다(김당택, 1991 「충선왕의 복위교서에 보이는 ‘宰相之宗’」『역사학보』 131; 1998 「원간 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에 재수록). 그러나 이는 충선왕의 정책을 원과 갈등하는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록에서 확인되는 충선왕의 성향과 개혁의 성격에 비추어,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50) 『고려사』 권90, 열전3 宗室 文宗 “金官侯杰 (중략) 有學術 (중략) 諫以爲不可娶同姓 王不從.”

원 세조 쿠빌라이가 허형(許衡, 1208~1281)을 중용한 이래 원에서는 성리학이 지배적인 학문이 되었고 고려의 지배층도 그 영향을 받아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이렇듯 원에서 성리학이 지배적인 학문이 됨으로써 이전에는 풍속이나 법제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사회적 요소들도 성리학의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되었다. 혼인율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주희는 고대 한족의 ‘종법(宗法)’을 회복하고자 『가례』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아비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동기(同氣)’를 강조하여 『가례』에 들어있는 각종 의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⁵¹⁾ 이에 따라 가족과 친족에게 적용되는 의례를 보편적인 습속이나 관행의 차원이 아니라 형이상의 원리에 근거한 진리의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에서도 공민왕대를 전후하여 『가례』가 권위를 발휘한 것이 확인된다. 『가례』의 준수가 개인을 칭찬하는 이유가 되었으며,⁵²⁾ 국가에서 사대부가의 제례를 “주문공가례”에 의거하여 지내도록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⁵³⁾

이렇듯 고려말에 『가례』의 실천이 강조된 것으로부터, 원의 유교 지식층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동기론을 이해하고 『가례』의 실천에 열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충선왕은 바로 이 시기에 장기간 대도(大都)에 머물렀다. 복위 이후에도 그대로 머물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배경으로 만권당을 설립하여 원의 성리학자와 교유하였으며, 성리학을 원의 관학(官學)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였다.⁵⁴⁾ 따라서 충선왕은 원에서 유행한 성리학적 논변의 틀 안에 들어있는 윤리와 의례를 올바르게 여겼다고 판단할 수 있다.

51) 이종서, 2003 「고려후기 이후 ‘동기’ 이론의 전개와 혈연의식의 변동」 『동방학지』 120.

52) 『고려사』 권112, 열전25 제신 鄭習仁 “恭愍朝 登第 補成均學官 (중략) 居父母憂 皆廬墓 終制 治喪 一用朱子家禮”; 『고려사』 권117, 열전30 제신 鄭夢周 “夢周始令土庶 做朱子家禮 立家廟 奉先祀”; 『고려사』 권121, 열전4 孝友 尹龜生 “退居錦州 立祠宇 以朔望四仲俗節 祭三代 冬至 祭始祖 立春 祭先祖 一用朱文公家禮.”

53) 『고려사』 권63, 지17 예 길례소사 大夫士庶人祭禮 公양왕 2년(1390) “八月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儀 (중략) 行禮儀式 一依朱文公家禮.”

54) 주채혁, 1988 「원 만권당의 설치와 고려유자」 『순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주채혁, 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몽골·고려 전쟁사 연구의 시각문제」 『애산학보』, 제3장 1절 ‘원 만권당의 설치와 고려의 주자성리학 수용문제’ 참조.

그리고 충선왕은 복위교서에서 공자에 대한 의례의 강조, 효자·열녀 등에 대한 포장(褒獎) 등 유교적 예제와 윤리를 강조하는 한편, 왕실 및 문무양반의 동성혼을 금지하였다.⁵⁵⁾ 따라서 복위교서 중의 동성금혼 명령은 충선왕이 성리학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종법(宗法)’을 이해하고 궁정함으로써 도출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원에서 한법(漢法)을 수용하여 제정한 법령이기도 했다.⁵⁶⁾ 따라서 충선왕의 동성혼 금지 명령은 그가 믿는 ‘올바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올바름이란 성리학적 정통론과 윤리의식이었다.

중국을 화(華)로 주변국을 이(夷)로 보는 것은 고대의 한족(漢族) 국가가 설정한 국제관계의 기본 틀이었고, 성리학적 정통론에 의해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화(華)·이(夷)의 구분과 상하 관계는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질서로 상정되었고, 그 상하 관계는 복식을 포함한 각종 의례를 통해 표현되었다. 충선왕이 스스로 자포를 착용한 것은 그가 중국 한족의 화이관을 수용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문화에 근거하여 화와 이를 나누었다. 특히, 북송과 남송의 성리학자들은 부자·군신의 의리를 위시한 사회 질서를 문화의 핵심 내용으로 인식하였다.⁵⁷⁾ 중국의 주변 민족이 이렇듯 화이관념과 결부된 성리학적

55) 김형수, 1998 「충선왕의 복위와 복위교서의 성격」 『대구사학』 56, 제3장 ‘복위교서의 내용과 성격’ 참조.

56) 김형수는 충선왕이 복위교서에서 유교적인 예제와 윤리를 강조했다고 하면서도 동성금혼 명령은 漢法을 수용하여 혼인체를 변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아 성리학과 한법을 연관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동성금혼의 목적은 유력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왕실을 보위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위의 논문, 제3장 1절). 그러나 동성금혼은 한족 왕조의 유구한 법률일 뿐더러 ‘종법’의 기본 원칙이었다. 필자도 원의 동성불혼 법제가 충선왕의 동성금혼 명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데에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리학적인 원리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충선왕이 왕실 뿐 아니라 문무양반 전체의 동성혼 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성리학적 신념에 의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충선왕이 원 세조의 명령을 언급한 것은 “동성이 통혼할 수 없음은 천하의 通理인데 너희나라는 문자를 알고 공자의 도를 행하니 응당 동성간에는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리학적 언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게다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宰相之宗’을 한정하고 왕실의 동성혼을 금지한 것은 오히려 왕실의 신성성을 약화시키고 외척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동성금혼 명령에 대한 기존 견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윤리의식을 수용하면 중국의 사회 질서를 본받으려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충선왕이 고려 왕실의 오랜 전통이었던 동성혼을 금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혼인은 ‘종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고, 역대 한족 왕조에서 동성 혼은 가장 비난받고 금기시하는 행태였기에 충선왕은 그가 믿는 올바름에 근거하여 고려의 혼인 관행을 개혁한 것이다.

이처럼 충선왕은 성리학적 정통론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관계와 한족의 사회질서를 모범으로 인식하고 각종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충선왕이 보여준, 중국 중심의 질서에 경도된 태도는 성리학을 수용한 이 시기의 유교 지식인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유교 지식인들은 고려의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원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당연시하였다. 또한 중국과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질서와 문화를 부정하였다.

최해(1287~1340)는 고려 전기에 황제국 체제를 취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원의 압력에 의해 격을 낮춘 것을 올바른 것으로 평가하였다.⁵⁸⁾ 이제현(1287~1367)은 선종(宣宗)이 어린 현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을 당시 사람들이 비판한 데 대해 현종의 왕위 계승이 정당했음을 주장하였다.⁵⁹⁾ 이지백이 성종의 한화정책을 비판하고 고려의 토착 문화와 종교를 옹호한 것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⁶⁰⁾ 이는 태조 훈요 중의 제3조 ‘맡아들이 불초하면 그 형제 중에서 추대를 받은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는 조항과 제4조 ‘우리 동방은 예부터 당풍(唐風)을 사모하여 문물과 예약을 모두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과 풍토가 다르고 인성이 각기 다르니 억지로 같게 하려 하지 말라’는 조항을⁶¹⁾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제현이 작성한 3편의 묘지명에서는 동성혼을 금기시하는 인식을 드러내었

57)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51면 참조.

58) 『拙藁千百』 권2, 文「東人四六序」 “然陪臣私謂王 曰聖上 曰皇上 上引堯舜 下譬漢唐 而王或自稱朕予一人 命令曰詔制 肆宥境內曰大赦天下 署置官屬 皆倣天朝 若此等類。大涉譖諱 實駭觀聽 (중략) 逮附皇元 視同一家 如省院臺部等號早去 而俗安舊習 紗病尙在 大德間 朝廷遣平章闢里吉思釐正 然後渙然一革 無敢有蹈襲之者.”

59) 『고려사』 권10, 세가10 현종 원년(1095) “李齊賢贊曰 宣薨而太子嗣 是爲獻宗 國人習熟見聞 乃謂宣有五弟 而立孺子 以是歸非 何不思之甚也.”

60)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6년(997) “李齊賢贊曰 李知白安救援不革土風 以爲却敵之策乎.”

6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6년(943) 4월.

다.⁶²⁾ 이색(1328~1396)은 고려 사회의 보편적 관행이었던 처가거주를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⁶³⁾ 그리고 이제현과 이색은 그들이 작성한 묘지명에서 이전 시기의 묘지명과 달리 서얼 자녀를 적실 자녀와 나란히 기재하였다.⁶⁴⁾

원간섭기에 고려의 유교 지식인이 보여준 이와 같은 모습들은 성리학적 화이관과 정통론, 그리고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해의 평가는 충선왕이 자포를 착용하고 독자적인 묘호와 시호를 포기한 것과 같은 의식을 반영한다. 이제현이 현종의 왕위계승을 긍정한 것은 성리학적 정통론과 종법에 근거한 적장자계승원칙에 부합한다. 이지백에 대한 비판과 동성혼을 금기시하는 의식, 처가거주 관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 질서와 관행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충선왕에게서 확인되는 의식과도 일치한다. 묘지명에 서얼을 기재한 것은 서얼을 자녀로 취급하는 성리학적 가족 윤리와⁶⁵⁾ 부합한다. 이들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일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원의 법령을 고려 사회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규명되었듯이 원 세조 쿠빌라이는 한족의 전통법을 수용하여 통치하였고, 이러한 한법 지향의 각종 조치들은 『통제조격(通制條格)』이나 『지정조격(至正條格)』으로 수합되었다.⁶⁶⁾ 원 제국에서 이들 법령은 성리학적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자 성리학에 의해 불변의 진리로 자리매김한 것 이었다. 게다가 고려는 명목상 원 제국의 일부인 정동행성이기도 했으므로 이를

62) 이제현은 각각 1347년, 1348년, 1350년에 작성한, 부부의 성씨가 같은 인물의 묘지명에서 “같은 파가 아니므로 혐의할 것이 없다[非一派爲無嫌]”, “公과 같은 김씨가 아니다[與公非一金也]”, “본래 두 가문이 성씨를 얻은 유래는 같은 李氏가 아니다[原兩家所以得氏非一李也]”라고 하여 본이 다르므로 정당한 혼인이라고 기술하였다(김용선 편지, 2012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531면 9행, 533면 48행, 547면 3행).

63) 『牧隱詩藁』 권13, 「紀事 是日大家多納婿」.

64) 이종서, 2015 앞의 논문 참조.

65) 이정란, 2003 『고려시대서얼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면; 이종서, 2015 앞의 논문 참조.

66) 이개석, 2003 『원조중기 법전편찬 연구와 『至正條格』의 발견』, 『동양사학연구』 83: 이강한, 2007 앞의 논문; 이강한, 2008(a) 앞의 논문 참조.

매개로 원법을 적용할 형세적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의 유교 지식인이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면 할수록 성리학에 부합하는 원의 법률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해졌고 실제로 적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족의 질서를 수용한 원법은⁶⁷⁾ 늦어도 1300년대 중반 무렵에 고려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곡(1298~1351)은 ‘통제(通制)’ 즉, 원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려의 구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던 당시의 사정과 더불어 정동행성 이문(理問)으로 부임한 중국의 유학자가 원 법을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를 기술하였다.⁶⁸⁾ 또한 통제조격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고려의 구법도 손상하지 않는 방안을 묻는 책문을 출제하였다.⁶⁹⁾ 이색은 전법판서(典法判書)를 지낸 윤해(1307~1376)의 묘지명에서 윤해가 통제조격과 고려의 관례를 함께 유의하며 법을 집행했음을 기술하였다.⁷⁰⁾

이곡과 이색이 부자관계이고 그들이 원법과 고려법의 적용에 대해 기술한 시기를 고려하면 원법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중심으로 통제조격이 적용되었으나 이후에는

67) 필자가 『통제조격』이나 『지정조격』의 모든 조항이 漢法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제조격』 중의 가족·친족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족의 윤리와 법률을 수용한 것이자 ‘宗法’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同宗救恤, 親迎制, 守節 장례, ‘娶嫂’ 억제, ‘娶叔母’ 금지, 동성금혼, 처첩제, 중혼금지, 처가살이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성혼을〉 금하지 않으면 회回인과 같게 된다 [不禁約呵 似回家體例有]”, “몽고인은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蒙古人不在此限]”, “畏兀兒家私”처럼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종족을 적시한 경우가 소수 확인된다. 따라서 『통제조격』의 가족·친족 관계 조문은 이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漢法을 계승하고 ‘종법’과 부합하는 것으로 원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通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68) 『稼亭先生文集』 권9, 序 「送掲理問序」 “省吏之執通制者則曰 普天之下 莫非王土 國臣之持舊法者則曰 世皇有訓 不改土風 於是出彼入此 趣輕舍重 皆有所說 莫可適從 法之不行 非由此歟 (중략) 君曰 然吾既有所受 惟知奉法而已 已而條理克明 請謁不行 吏絕其私 民服其公 要不失朝廷之大体 而不撓本國之舊俗耳 人法並用 余於君見之.”

69) 『稼亭先生文集』 권1, 雜著 「策問」 “先有大元通制 後有至正條格 (중략) 今欲上不違條格 下不失舊章 使刑法歸一而人不苟免 其要安在.”

70) 『牧隱文藁』 권18, 豆비명 「坡平君尹公墓誌銘并序」 “公諱旼 字子奇 坡平縣人也 (중략) 歲壬子 拜典法判書 (중략) 通制條格 本國判旨 留意尤深.”

고려의 관리들도 고려법과 원법을 함께 참조하여 법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뒷 날 우왕이 중앙과 지방의 판결에 온전히 지정조격을 적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⁷¹⁾ 이미 고려의 관리들이 원법에 익숙해 있었고, 원법을 판결에 적용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원 간섭기에는 성리학적 화이론과 정통론,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고려의 기준 관행과 질서를 변경하려는 지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한법(漢法)을 수용한 원의 법률은 이러한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통제조격』에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과 서얼의 관직임용을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충선왕이 동성혼을 금지한 아래 왕실은 물론 개경의 관리들 사이에서 동성혼(동성동본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나, 일자가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한 사례들은 모두 이들 법조문이 지난 효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맷음말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원간섭기에는 상반된 두 질서가 공존하였다. 하나는 본래 원종과 쿠빌라이의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고려 전기 수준의 정치적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질서였다. 그러나 충렬왕 때에는 제후국의 수준으로 격하된 상태에서 문화적 독자성만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질서는 이후 ‘세조구제’로 규정되어 고려의 제후국 수준의 독립과 문화적 독자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중에는 지배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천즉천’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제후국 수준의 독립을 긍정하는 가운데 ‘세조구제’가 보장한, 신분제를 포함한 문화적 독자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지향 혹은 질서도 성립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양상으로는 몽골의 복식을 착용하고, 천민 출신이 정계에 진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한 요인은 우선, 형세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원제국의 한시적인 강성함에 힘입은 것이었으므로 원의 쇠퇴와 더불어 위

71) 『고려사』 권84, 지38 형법 직제 “三年二月 令中外決獄 一遵至正條格.”

축되고 소멸할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원의 사상과 문화를 신념의 차원에서 수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고려의 기준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지향이 성립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은 충선왕이 강하게 표출하였고, 성리학을 수용한 유교 지식인들도 동일한 지향을 표출하였다. 이들의 지향은 신념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원이 쇠퇴한 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성리학적 질서를 옹호하는 원법이 고려에서도 효력을 지님으로써 이들의 지향에 근거한 새 질서가 짹트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고려후기에 상반되는 질서가 공존함으로써 고려는 멸망하기까지 일원적으로 규율되지 못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원법이 고려법과 함께 효력을 지녔다. 고려 후기 두 질서의 충돌과 부조화는 특히 신분제의 운영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세조구제’에 의해 보장된 신분질서는 ‘일천즉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열자 또한 천인에 속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열자들이 아들로 대우를 받았으며, 정계에 진출하여 고위 관직으로 승진하였다. 특히 과거를 통한 진출이 두드러졌다. 열자가 아들로 취급되고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성리학적 신념에 근거하여 성립한 질서 속에서 가능해진 일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일천즉천’에 기반한 신분질서와 성리학에 근거한 신분질서가 병존하였으므로 필요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귀결될 수 있었다. 일례로 원에서 서얼 출신인 덕홍군을 국왕으로 임명하여 공민왕을 대신하게 하자 고려에서는 ‘원 세조가 토풍을 고치지 말라고 명령하여 정적(正嫡)이 오래 동안 왕위를 이어 왔다’며 서얼은 국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⁷²⁾ 그러나 공민왕은 자신의 열자인 왕우를 후계자로 지명하였고, 왕우는 공민왕 사후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렇듯 원의 간섭이 소멸한 뒤에도 상반된 두 질서가 공존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선택과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상반된 선택과 적용은 지배층의 이익과 사상적 지향이라는 두 요소가 작용하는 가운데 도출될 것임

72) 『고려사』 권113, 열전26 제신 安遇慶 “元立德興君爲王 納之 遇慶以贊成事 爲都指揮使 忖
義州 移書婆娑府脫脫禾孫曰 (중략) 且世祖皇帝 命不改土風 正嫡承襲 其來遠矣 (중략)
立孽庶爲王 改易土風 而使世祖皇帝詔旨 墜於空虛 此天下之罪人也.”

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어떤 열자는 ‘일천즉천’의 원리에 따라 노비가 된 반면, 어떤 열자는 성리학적인 신념에 따라 아들로 대우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고려는 이렇듯 상반된 두 질서가 병존하는 가운데 멸망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질서를 조화시키고 일원화하는 작업이 조선 초기의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열자를 포함한 서얼제도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조선 지배층의 지향과 갈등 및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건국과 제도정비 과정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세조구제, 화이관, 성리학, 漢法, 通制條格

투고일(2015. 7. 27), 심사시작일(2015. 8. 2), 심사완료일(2015. 8. 18)

〈Abstract〉

Coexistence of Two Contradictory social order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Goryeo,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such Coexistence

Lee Jong-seo*

During the so-called ‘Yuan Intervention period,’ two contradictory orders were coexisting throughout the entire Goryeo society. One was an aspiration to preserve Goryeo traditions, based upon the legendary agreement that had reportedly been reached between Goryeo king Weonjong and Yuan Emperor Qubilai. The other was a determination to negate the indigenous nature of Goryeo culture, including the social stratification platform, in favor of an entirely new system. This kind of situation was brought on by Yuan empire’s apparent dominative position and Goryeo’s subsequent embracement of Yuan culture and philosophy, which would have undoubtedly inspired some Goryeo people to change or modify the culture and order they had previously enjoyed. As a result, even after the Yuan empire was gone, the Goryeo people came to consider all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left by Yuan as part of many options that they could base their operations on, and also found themselves torn between different choices to approach a single situation. Goryeo was facing a task of creating a balance and forming a compromise, but was not able to see to it to the very end, so the task was handed over to the newly born Joseon dynasty.

Key Words : Old promise of Emperor Qubilai, notion of the civilized and the barbaric, Neo-Confucianism, Chinese customs(漢法), Yuan Law Code (“通制條格”)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Ulsan University.